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95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06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국내대리인 지정의 실효성 제고(제2209795호)	10
3. 국내대리인의 불법정보 처리 의무 강화(제2209806호)	21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795호)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4.

다. 회 부 일 : 2025. 4. 15.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806호)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795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2항).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3항).
- 다.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5항 신설).
- 라. 국내대리인의 업무인 이 법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76조제2항제6호 신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제2209806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함¹⁾²⁾.
 - 국내대리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신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업무를 수행함.
 - 2025년 4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는 총 46개 사(社)임³⁾.
-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용자가 해외사업자에게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1)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를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3) 각 사업자별 지정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일부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관되어, 현재는 자료제출 의무만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로 남아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어,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또한, 최근 해외 플랫폼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등 온라인상 범죄의 매개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형사처벌 등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등의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를 통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정보 공개 및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실제로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국내대리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절차가 없어 관계부처의 관리가 곤란한 점, 국내대리인 정보의 표시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제도 활용이 어려운 점, 국내대리인이 서류 제출 등의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여 이용자 보호가 미흡한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⁴⁾.

○ 다만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에서 제외된 사업자를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지정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등 법률 위반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기존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의무 강화만으로는 제도의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⁵⁾, 실제 의무 이행이 필요한 사업자가 아닌 기준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업자의 의무만 강화되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사업자단체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현재 국내 규제기관과 연락이 되지

4)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3-01, 한국법제연구원, 2023.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24.12.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2024.12., p. 64-70.

않으면서 법 준수를 회피하는 해외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고,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인 대다수의 기업에게만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따라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정의무자의 범위,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도 변경 시의 기대효과와 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정도, 국내대리인과 지정의무자의 법령 준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도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은 모두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강화하는 경우 제도 간 형평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정의무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기통신사업자 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로서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대리인의 업무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대한 물품·서류 제출 (개정안) 방통위의 불법 정보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계획, 이행상황, 이행 결과 통보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 확보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현황 및 계획 제출 - 이용자 보호 업무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를 위한 자료의 제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 업무 - 개인정보 유출 등 의 통지 및 신고 - 개보위에 대한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 소가 있는 자 (개정안)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자 - 지정의무자가 설립 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자 (- 지정의무자가 설립 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 우 해당 법인)
기타 지정의무자의 의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 (개정안) 국내대리인 및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방통위에 통보 (국내대리인 변경 시 포함)	-	-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 ·점검 등 관리감독)
기타 국내대리인의 의무	- (개정안)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관계부처와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조치	지정의무자와 유효한 연락수단 확보	-
의무이행확보 수단	- 국내대리인 미지정: 2천만원 ↓ 과태료 (개정안) 담당자 미지정	- 국내대리인 미지정: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 국내대리인 미지정: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구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2천만원 ↓ 과태료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위반 2천만원 ↓ 과태료 - 국내대리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포함 1천만원 ↓ 과태료)

*괄호 부분은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97호, 2025.10.2. 시행) 내용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5754호,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대리인 지정의 실효성 제고(제2209795호)

가. 개정안 요지

-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지정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안 제32조의5 제2항).
 -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제1호)
 -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제2호)
- 지정의무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제3항).
 -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제1호)
 -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제2호)
 -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제3호)
- 국내대리인은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5항).
- 제6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 안 제32조의5 제5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u><후단 신설></u> <u><신 설></u> <u><신 설></u>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u> <u>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u> <u>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u> <u>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u> <u>지정하여야 한다.</u>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 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이 임원 구성, 사 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③ -----

현행	개정안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2. (생략) <신설> ④ (생략) <신설> <신설>	----- -----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국내대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공개 및 통보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및 연락가능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4의4. (생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신설>	6.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2의5. (생략)	1. ~ 2의5. (현행과 같음)
<신설>	2의6.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 21. (생략)	3. ~ 21. (현행과 같음)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삭제>
23. ~ 25. (생략)	23.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 및 관계부처와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강화(안 제32조의5 제2항)

○ 지정의무자가 설립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권한만을 부여받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의무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⁶⁾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6)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법률 제20897호, 2025.10.2. 시행)⁷⁾은 이미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국내 대리인 업무에 더 신속하고 충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 연구결과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법인만 설립하면 다른 요건에 제한이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⁹⁾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¹⁰⁾은 위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8) 김윤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 23-01, 한국법제연구원, 2023.6. p. 66, 108-109.

9) **제10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0)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법인의 사업 부문이 해외 본사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내 법인 임직원이 해외 본사의 사업 관련 실무사항을 알기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재 지정된 국내대리인보다 사업자가 설립·운영하는 국내법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낫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함.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특정 법인이 국내 소재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판단 없이 국내 법인만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담당자 지정 의무(안 제32조의5 제5항)

-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해당 의무는 현행 국내대리인 제도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의무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¹¹⁾, 국내대리인 제도에 따른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내대리인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11)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할 것인지는 국내대리인이 업무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라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를 불문하고 누구나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고¹²⁾,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지정의무자 중 자연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는바, 이처럼 국내대리인이 자연인인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도 국내대리인에 대한 담당자 지정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 둘째, 해당 의무의 취지는 현행 제도 하에서 모니터링, 과태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담당자 지정 의무는 국내대리인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페이퍼컴퍼니 등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여 법률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¹³⁾, 국내대리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12)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13)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또한, 동법은 국내대리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⁴⁾, 이는 국내대리인과의 유효한 연락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해당 주소와 연락처의 유효성에 대한 관계부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국내대리인 운영실태 점검('24.11.~'25.3.)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사업자의 대리인 정보 인터넷 사이트 공개 여부 및 전화 연결의 용이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국내대리인 운영실태' 점검 결과 중>

□ 점검결과

① 국내대리인 지정사업자(40개 社)

①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터넷 사이트 공개여부

- 모든 해외사업자가 대리인 정보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1개 社)가 영문으로만 공개하고 있어 국문으로 개선 권고
- 또한, 공개된 정보 중 대표자명과 주소지가 불일치*하여 현행화 조치(2개 社)

② 전화 연결의 용이성 여부

- 대리인이 직접 전화를 받거나 상담직원이 대리인업무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등 전화대응이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 일부 사업자(4개 社)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내대리인과 직접 전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14)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유형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필요시 해외사업자와 원활한 연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대리인 자체가 지정의무자의 업무를 대리할 자를 의미하는바, 그의 업무 조직 내부에 별도의 인력을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국내대리인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에게까지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며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 담당자가 민원처리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국내대리인 업무 수행에 상시 연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고 규제기관과 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이고,
해외사업자에게만 법적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인력을 두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며,
개별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운영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기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 및 변경 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정보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미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국내대리인의 불법정보 처리 의무 강화(제2209806호)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44조의7 제6항 신설).
- 안 제44조의7 제6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4호의3 신설).
-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안 제44조의7 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의 통보를 추가함(안 제32조의5 제1항 제3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현행	개정안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④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76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에 대한 통보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현행	개정안
1. ~ 4의2. (생략) <u><신설></u>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조치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u>
<u>4의3. · 4의4.</u> (생략)	<u>4의4. · 4의5.</u>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5. ~ 25.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¹⁵⁾.

1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¹⁶⁾.

○ 개정안은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해외사업자 중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자의 경우 국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은 정보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사법 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명령의 이행 여부와 이행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¹⁷⁾.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16)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Article 9 Orders to act against illegal content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특정 정보를 삭제·차단 등 조치하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처리 가능한 단순 업무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서 사업자에게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치명령의 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행결과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이행 사업자 고발을 위해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행결과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1. Upon the receipt of an order to act against one or more specific items of illegal content, issued by the relevant national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Union law or national law in compliance with Union law,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inform the authority issuing the order, or any other authority specified in the order, of any effect given to the order without undue delay, specifying if and when effect was given to the order.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조치명령을 받은 수범자에게 추가적으로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실익이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참고: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25.4. 기준)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번호	사업자명	국내대리인
1	Adobe	한국어도비시스템즈	24	Roblox	제너럴에이전트
2	Agoda	법무법인 케이씨엘	25	Skyscanner	법무법인 태평양
3	Airbnb	에어비앤비코리아	26	Shein	법무법인 태평양
4	Ali express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27	Snap	제너럴에이전트
5	Booking.com	법무법인 태평양	28	SONY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6	Dailymotion	법무법인 광장	29	Sony InteractiveEntertainment	(주)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
7	Epic games	에픽게임즈코리아	30	Sony Music entertainment	소니코리아
8	Expedia	법무법인 대륙아주	31	Supercell	제너럴에이전트
9	Google	주식회사 디에이전트	32	SPOTIFY AB	법무법인 대륙아주
10	Hilton	정병혁	33	Tiktok	법무법인 태평양
11	Hotels combined	법무법인 케이씨엘	34	Trip.com	씨트립코리아
12	Hotels.com	법무법인 대륙아주	35	Temu	제너럴에이전트
13	Hyatt hotel	HYGCC KOREA	36	Tripadvisor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14	Intel	법무법인 화우	37	Ubisoft	제너럴에이전트
15	LINE	법무법인 태평양	38	Zoom	제너럴에이전트
16	Linkedin	제너럴에이전트	39	Canva	제너럴에이전트
17	Marriott International	법무법인 광장	40	Pinterest	제너럴에이전트
18	Microsoft	제너럴에이전트	41	X(구 트위터)	트위터코리아 유한회사
19	Match group	제너럴에이전트	42	Discord	법무법인 울촌
20	Meta Platforms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43	Salesforce	법무법인 케이씨엘
21	Nike	제너럴에이전트	44	Open AI	제너럴에이전트
22	Oracle	한국오라클유한회사	45	Appvestor ApS	제너럴에이전트
23	PayPal	제너럴에이전트	46	Playrix	제너럴에이전트